2.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 제도 개요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민원 처리 현황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례로 정함

□ 정보공개 구분

○ 사전정보공개 :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청구가 있기 전에 사전에 공개함
- 공개방법 : 합천군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http://www.hc.go.kr)

○ 원문정보공개 : 부군수 이상 결재·생산 문서에 대하여 원문 공개

○ 사후정보공개 :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직접 요청함.

□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 개인, 법인, 단체 포함

□ 정보공개청구 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 군청 민원지적과
- 온라인 신청시 :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 이용

○ 처리기간 :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회 연장 가능)

○ 수 수 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징수

○ 불복 구제 절차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능

□ 업무흐름도

신청서작성 및 온라인 신청 (민 원 인) → 접 수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공개·비공개결정 (처리부서) → 결 재 (처리부서) → 결과통보 (처리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의처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930-3193	